

중소기업청 지원자금

1. 중소기업 정책자금(융자) 지원체계(공통사항)

□ 지원기준

- ◇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
 - ◇ 지원제한
 -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
 - *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,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% 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, 중소·벤처 창업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은 적용배제
 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 -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한 기업

□ 지원한도

- ◇ 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자금을 합하여
잔액기준으로 업체당 50억원(또는 매출액의
125%)
* 구조개선자금(시설), 중소·벤처창업자금의
경우 매출액 기준적용배제

□ 신청 · 접수기간

- ◆ 2002. 1. 7 ~ 자금조진시까지
* 개발기술사업화 자금, 지방중소기업
육성자금은 별도공지

2. 구조개선자금

사업목적

- ◇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
 -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할 것
 - 불한진출 중소기업

□ 지원법위

- ◇ 기업이 생산설비를 구입·개체하거나,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·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
 - ◇ 시설도입 후 소용되는 초기가동비(시설자금의 30% 이내)
 - 다만, 지식기반 산업은 시설자금의 100% 이내
 - ◇ 입수·합병 등에 소요되는 구조조정 자금

□ 지원조건

- ◇ 대출금리 : 연 6.25%(변동금리)
 - ◇ 대출기간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포함)
 - ◇ 대출한도
 - 소요자금의 100% 이내로 업체당 연간 총 20억원 이내(다만 장치산업의 경우 30억원 까지)

□ 신청·접수기관 및 문의처

- ◇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분부
 - ◇ 중소기업청 기업진흥과(02-509-7037~5)
 - ◇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지원팀
(02-769-6873~5)

3. 경영안정자금

□ 사업목적

- ◇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생산·판매·기술개발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

□ 지원규모 : 2,400억 원

□ 지원대상

- ◇ 일반경영안정자금
 -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(전업율 30% 이상)하는 중소기업 및 북한 진출 중소기업

◇ 특별경영안정자금

- 최종 부도 발생기업, 금융기관·신용보증기관 등의 신용불량 기업, 화의·법정관리 진행중인 기업 등

▣ 지원범위

- ◇ 원부자재 구입, 경영·기술혁신, 기술도입 및 사업화, 국내외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- ◇ 재해, 구조조정 등 일시적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
▣ 지원조건

- ◇ 대출금리 : 연 6.25%(변동금리)
- ◇ 대출기간 : 3년 이내(거치기간 1년포함)
- ◇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5억원 한도(매출액에 따라 차등)
- ◇ 지원방법
 - 중진공 신청·접수를 통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부 및 순수신용 직접대출 실시
 - * 예외적인 경우 담보(부동산 등)부 직접(대리)대출 실시

▣ 신청·접수기관

- ◇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

▣ 문의처

- ◇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(042-481-4377~9)
- ◇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지원팀
(02-769-6873~5)

4. 중소·벤처창업자금

▣ 사업목적

- ◇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

▣ 지원규모 : 2,500억원

▣ 지원대상

- ◇ 창업을 준비중인자
- ◇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(신청·접수일기준)인 중소기업
- ◇ 지원제한
 -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(숙박 및 음식점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무도장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미용·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)
 -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

▣ 지원범위

- ◇ 창업 및 창업초기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

▣ 지원조건

- ◇ 대출금리 : 연 6.25%(변동금리)
- ◇ 대출기간
 - 시설자금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포함)
 -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포함)
- ◇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10억원 한도(단,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)
- ◇ 지원방법
 - 중진공(신용보증기관)의 신청·접수를 통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부 및 순수신용 직접대출 실시
 - 예외적인 경우 담보(부동산 등)부 직접(대리)대출 실시

▣ 신청·접수기관

- ◇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(담보부, 순수신용)
- ◇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(기술평가 보증서부)
- ◇ 지역신용보증재단(일반 보증서부)

▣ 문의처

- ◇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 (042-481-4408, 4414)
- ◇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창업팀
(02-769-6642~5)
- ◇ 기술신용보증기금(02-789-9308, 9492)
- ◇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(042-477-6002~3)

5.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

▣ 사업목적

- ◇ 지식 정보화 시대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의 육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세 창출과 동시에 안정적인 내수기반 마련

▣ 지원규모 : 1,000억원

▣ 지원대상

- ◇ 지식기반 서비스업(전업율 30% 이상)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- ◇ 지원제한
 - 퇴폐향락업종 영위기업,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

▣ 지원범위

- ◇ 지깃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

▣ 지원조건

- ◇ 대출금리 : 연 6.25%(변동금리)
- ◇ 대출기간
 - 시설자금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포함)
 -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◇ 대출한도
 - 동일기업당 10억원 한도(단, 운전자금의 경우 5억원)

▣ 신청 · 접수기관

- ◇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

▣ 문의처

- ◇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(042-481-4377~9)
- ◇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지원팀
(02-769-6873~5)

6.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

▣ 사업목적

- ◇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

▣ 지원규모 : 2,500억원

▣ 지원대상

- ◇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 : 상시종업원 10인 이하 업체
- ◇ 도·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이하 업체
- ◇ 지원제외 대상
 - 금융 및 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또는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

▣ 지원범위

- ◇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

▣ 지원조건

- ◇ 대출금리 : 연 6.25%(변동금리)
- ◇ 대출한도 : 5천만원 이내
- ◇ 대출기간 : 5년(거치기간 1년 포함)
- ◇ 상환방식
 -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%는 3개 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%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
- ◇ 대출취급은행
 - 국민 · 기업 · 한미 · 하나 · 부산 · 대구 · 광주 · 전북 · 경남 · 제주은행, 농협

□ 신청 · 점수기관

- #### ◆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

생산설비

□ 문의처

- ◇ 중소기업청 소기업과 (02-509-7061~2)

□ 지원조건

- ◇ 대출금리 : 연 5.75%(변동금리)
 - ◇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- ◇ 대출한도 : 업체당 5억원(운전자금의 경우
3억원)
 - ◇ 대출방식 : 순수 신용대출

7. 개발기술 사업화자금

□ 사업목적

- ◆ 기술성·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
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술력 중심의
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이행촉진

□ 신청 · 접수기관

- #### ◇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

□ 지원규모 : 500억 원

□ 지원대상

- ◆ 최근 3년 이내 중기청 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중소기업
 - 기술 혁신 개발사업, 산·학·연 공동 기술개발커소시엄사업

□ 문의처

- ◆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(02-481-4377~9)
 - ◆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지원팀
(02-769-6873~5)

◇ 지원제한

- 대기업 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
계열사로 지정된 업체
 -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,
휴·폐업중인 업체
 - 사업장 면적이 500㎡ 이상인 공장등록
대사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

◇ 시중은행의 무

□ 사업목적

- ◇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
수출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
경제발전도모

□ 지원규모 : 500억 원

□ 지원대상

- ◇ 수출계약 중소기업
 - 중소기업청(수출지원센터) 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우대지원

□ 지원범위

- ◆ 15억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(L/C, D/A, D/P, Local L/C, T/T, M/T, 구매확인서)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 지원(수출계약액의 90% 이내)

□ 지원범위

- ◇ 개발기술 및 특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, 시장 개척비용, 추가개발비 등
 - ◇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

□ 지원조건

- ◊ 대출금리 : 5.1% (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 준용)
- ◊ 대출기간 : 최장 180일 (선적일로부터 7~15일 이내)
- ◊ 대출방식
 - 순수신용 혹은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부증 (3:7)으로 지원
 -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

□ 신청 · 접수기관

- ◊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

□ 문의처

- ◊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(042-481-4377~9)
- ◊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지원팀
(02-769-6873~5)

9. 협동화 자금**□ 사업목적**

- ◊ 다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시설, 공해방지시설,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

□ 지원규모 : 1,800억원**□ 지원대상**

- ◊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유통산업 관련업,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3개 이상의 중소 기업
 -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 업종 미 적용
 - 창업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는 참가업체수의 1/2 범위 이내
 -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, 휴·폐업중인 자, 실천계획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

자(취소사유가 해당업체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)는 제외

□ 지원범위

- ◊ 시설자금 : 건물 · 부지매입비, 임차보증금,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(추진주체는 50억원 이내, 참가업체는 40억원 이내)
- ◊ 운전자금 : 사업장 준공 이후 정상가동 소요자금 (추진주체는 10억원 이내, 참가업체는 5억원 이내)
- ◊ 협업화 자금 : 관로개척, 원자재구매, 기술개발, 상표개발 등의 소요자금 (추진주체는 30억원 이내, 참가업체는 20억원 이내)

□ 지원조건

- ◊ 대출금리 : 연 6.25% (변동금리)
- ◊ 대출기간
 - 시설자금 : 10년 (거치기간 5년)
 - 운전자금 및 협업화 자금 : 5년 (거치기간 2년)

◊ 신청 · 접수기관

- ◊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

□ 문의처

- ◊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(042-481-4387, 4426)
- ◊ 중소기업진흥공단 협동화사업팀
(02-769-6672~4)